



판매개시일 : 2016. 4. 1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판매제외요임인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의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채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본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생존연금이 지급되기 전 이후에는 제외) 중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거주자일 경우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일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1.5%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가 부과되며, 전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연금저축은 관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적용이율 본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계산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단, 적용이율은 적용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 상품의 요약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참조)

단, 본 상품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별도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예금저 보호연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하실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amsunglife.com(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e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사립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가 차감된 일부 금액만 적용이율로 부리됩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당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5)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제(BA 제 16-28호, 16-03-11)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KEB하나은행(2003009100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빌딩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5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B1.4(무배당)

노후준비에 세액공제까지 받는 명명한 방법



보험사

판매사

삼성생명



KEB 하나은행

01 세액공제 혜택

납입보험료가 세액공제됩니다.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합산)로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거주자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포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03 노후준비

필요에 따른 연금수령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방법은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중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no1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 삼성생명!

국가 고객만족도 12년 연속 1위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2004 ~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3년 연속 1위

서비스부문(생명보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4~201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3년 연속 1위

생명보험부문/
한국표준협회 2003 ~ 2015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351.1%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
2015년 12월 발표

02 유연한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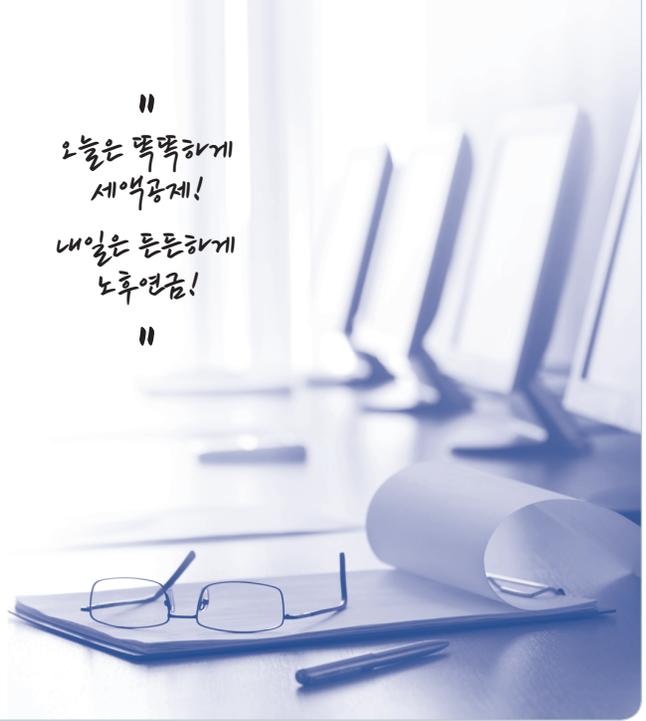
계약해당일 기준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 (계약자가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총 합계는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2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04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부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똑똑하게
세액공제!
내일은 든든하게
노후연금!
||



연금지급예시

여자 40세, 전기월납, 월보험료 334천원, 60세 연금지급개시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례어는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에서는 최저보통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는 감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평균치에 따라 예시합니다.
- ※ 최저보통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98%는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와 공시이율 연복리 2.98%(2016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98%는 2016년 3월 현재 공시이율입니다.

중신연금형 (피보험자 생존시)

보통지급기간	최저보통이율 기준	연복리 2.98%유지시 1)	연복리 2.98%유지시 2)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	8,570만원	10,400만원	10,400만원
10회 보증	매년 275만 원씩 지급	매년 457만 원씩 지급	매년 457만 원씩 지급
20회 보증	매년 273만 원씩 지급	매년 454만 원씩 지급	매년 454만 원씩 지급
30회 보증	매년 267만 원씩 지급	매년 446만 원씩 지급	매년 446만 원씩 지급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보증	매년 247만 원씩 지급	매년 422만 원씩 지급	매년 422만 원씩 지급

확정기간연금형

확정지급	최저보통이율 기준	연복리 2.98%유지시 1)	연복리 2.98%유지시 2)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	8,570 만원	10,400만원	10,400만원
5년형	매년 1,739만 원씩 지급	매년 2,193만 원씩 지급	매년 2,193만 원씩 지급
10년형	매년 891만 원씩 지급	매년 1,176만 원씩 지급	매년 1,176만 원씩 지급
15년형	매년 608만 원씩 지급	매년 840만 원씩 지급	매년 840만 원씩 지급
20년형	매년 467만 원씩 지급	매년 674만 원씩 지급	매년 674만 원씩 지급
30년형	매년 327만 원씩 지급	매년 511만 원씩 지급	매년 511만 원씩 지급

- ※ 가입예는 중신연금형 선택 가능. 이후 연금지급개시일에 연금형태 변경 가능함. 연금지급개시일에는 변경불가
- ※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 적립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전 피보험자가 초기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금 적용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 최종 적립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최종예시 금액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 최종예시 금액과 다르거나 변동하여 실제 적립액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또한, 실제 적립액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치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보험료 납입유예, 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할 등이 있는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전 공시이율과 계속하여 동일할 경우 예시금액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며,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이 됩니다.
-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후에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 중신연금형은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 중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영 연금사자들의 개칭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영 연금사명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이 됩니다.
- ※ 최종예시 금액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예시금액보다 적습니다.
- ※ 연금지급액에 관련세법에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소득세율(6.5%,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단, 중신연금형은 보통지급기간(10회, 20회)만에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중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동안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지급합니다.
- ※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지급시 : 피보험자 사망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여자 40세, 전기월납, 월보험료 334천원, 60세 연금지급개시

- ※ 최저보통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1.0%를 말합니다.
-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98%는 평균공시이율 3.5%(2016년 현재)와 공시이율 연복리 2.98%(2016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98%는 2016년 3월 현재 공시이율입니다.

기간	납입보험료	(단위 : 원 %)		최저보통이율 기준		연복리 2.98%유지시 1)		연복리 2.98%유지시 2)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
1년	4,008,000	3,670,920	91.5	3,066,530	3,701,180	92.3	3,091,800	3,701,180	92.3	3,091,800
3년	12,024,000	11,498,820	95.6	9,605,480	11,763,830	97.8	9,826,750	11,763,830	97.8	9,826,750
5년	20,040,000	19,561,980	97.6	16,340,850	20,311,460	101.3	16,966,670	20,311,460	101.3	16,966,670
7년	28,056,000	27,867,480	99.3	23,278,580	29,373,400	104.6	24,536,030	29,373,400	104.6	24,536,030
10년	40,080,000	40,911,060	102.0	34,173,930	44,118,220	110.0	36,851,920	44,118,220	110.0	36,851,920
15년	60,120,000	62,752,210	104.3	52,417,890	71,866,780	119.5	60,028,560	71,866,780	119.5	60,028,560
20년	80,160,000	85,707,470	106.9	71,592,140	104,003,740	129.7	86,869,520	104,003,740	129.7	86,869,520

직전 1년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변동내역

연월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2	'16.3
공시이율	3.55%	3.50%	3.43%	3.39%	3.34%	3.29%	3.25%	3.20%	3.13%	3.07%	3.05%	3.02%	2.98%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10년)이내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 (최저보통)에 따라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 이 보험상품은 객관적 외부지표(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동화증권중수익률, 및 '영도상업은행' 수익률)을, 호환한 이율의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로 적용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후에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 '기타소득' 예상액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관련 세법(또는 다른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소득세율(6.5%,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단, 세법에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 신청시에는 연금수령연도 이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최종예시 금액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 최종예시 금액과 다르거나 변동하여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또한, 실제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치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치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최종의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최종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율 변동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고액의 '세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의 적립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최초 가입시 중신연금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연금지급시 전일 또는 최초 연금수령시점에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중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생존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회, 20회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 계약소멸사유 : 연금지급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지급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 보험료 납입연세 사유 : 없음
- ※ 적립액 :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월계약해당일과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유류)을 적립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 보통지급기간 중 '100세'와 '100세 계약해당일의 연금까지'를 말합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에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에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가능합니다.
- ※ 중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 15, 20, 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 (6, 10, 15, 20,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 중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영 연금사자들의 개칭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영 연금사명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지급이 됩니다.

연 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효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400만원 X 16.5% = 66만원

(지방소득세 1.5% 포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거주자)

400만원 X 13.2% = 52만8천원

(지방소득세 1.2% 포함)

연금저축 관련 세제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거주자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포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단, 계약자의 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연금수령 가능) ※ 과세기간개시일은 1)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신청일 기준, 2)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 X 120%
(11 -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과세

- 전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 종결
(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나이(만나이 기준)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확정기간연금형 5.5%, 종신연금형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시 과세(연금 외 수령)

-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포함)과세
 - 단, 사망 등 특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

계약부활(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 가능
 -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
 - ※ 단,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적립액이 상기 공제액 합계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함
 - ※ 계약부활 간소화(1회납 부활) 신청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연료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미납된 보험료와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의 납입기일 및 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 필요)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연기됨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총 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 x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x 10%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A : 연금지급개시나이, M :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이상	전기납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0~43세	0~42세	0~42세	0~42세	0~(A-13)세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0~45세	0~45세	0~(A-10)세	0~(A-M)세	0~(A-M)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0~47세	0~47세			
20만원 이상 33만원 미만		0~49세	0~(A-7)세			
33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0~(A-5)세				

- ※ 10년납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10년납 이상의 납입기간으로 연장 및 단축가능 (5/7년납의 경우 연장 및 단축 불가, 10년납 이상에서 5/7년납으로의 단축 불가)
- ※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연금지급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연단위로 선택 가능)

※ 회사가 정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변경(단축 및 연장) 가능

연금지급방법 : 종신연금형 (10회, 20회),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단,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가능

※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가능,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에 연금형태 변경 가능(단, 연금지급개시전에는 변경 불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당월포함 12개월 선납 가능)

납입한도 : 월보험료 5만원 ~ 50만원 ※ 가입한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

보험료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연금지급개시나이 - 2년」까지 수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한도 ※ 1회당 최저납입한도 : 1만원이상, 천원 단위로 가능
계약해당일 기준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1,800만원 한도(연금계좌 합산)
-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정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에 가산되어 연금지급에 사용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 가능
-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 비용(납입후 유지관리비용)을 공제
- 단, 보험계약대출 과다 등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때는 납입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이 경우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
 - ※ 납입유예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완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
 - ※ 1회 신청당 1년, 최고 3회 납입유예신청 가능(보험료 연체시 연체 개월 수 포함)
 - ※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기되고 납입기간도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